

우리 나라 제조물배상책임법의 도입 및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김재봉*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oduct Liability Law in Korea

Jaebong Kim

I. 서론

오늘날 기업경영을 둘러싼 각종 법적인 배상책임 중에서 생산제품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 소송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제품의 잠재 수요자인 사회일반 대중의 소비자 보호의식의 팽배와 소비자 권리옹호를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물 배상책임에 대한 제반 입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으로 판례가 형성된 후 피해자가 생산제품의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제조업체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엄격배상책임의 법리가 도입된 후 EU(1985), 일본(1995), 호주(1992), 중국(1993) 등 많은 국가들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결함제조물 관련 소송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법규는 전통적인 과실 책임 법리에 토대를 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법리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기존 법리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미흡성과 주요 선진국의 입법동향에 따라 선진국과 같은 엄격주의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의 특별법인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는 결함제조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조물책임 특별법(가칭)」을 제정코자 1998년 11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법은 1999년 상반기 중에 제정되어 2000년부터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달성될 수 있으나 기업은 생산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배상책임소송의 증가, 각종 제품관련 안전예방 대책에 대한 투자 등 많은

* 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제무역경제학부 부교수, 경영학 박사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기업파산상태에도 이르게 될 수 있는 등 동법의 도입은 기업경영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기업경영을 둘러싼 제조물배상책임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제조물책임의 개념 및 기본법리,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 배상책임 관련 법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논문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작성한 제조물책임법 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동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과 기업의 법적인 방어대책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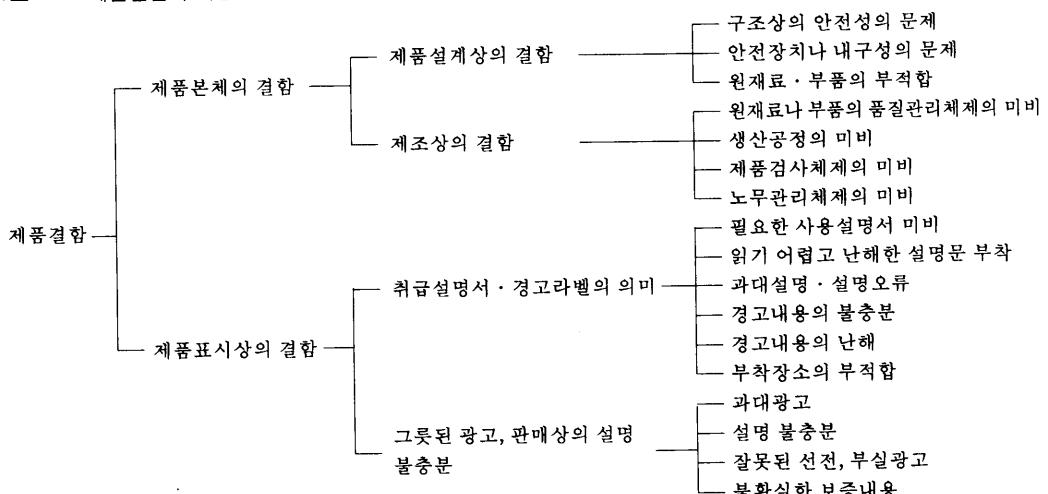
Ⅱ. 제조물책임개요 및 기본법리

1. 제조물책임 개념

제조물배상책임이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 및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 재산, 기타권리 등에 손해를 입을 경우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의 과정에 관여한자 즉,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¹⁾으로 제조자책임 (manufacturer's liability) 또는 공급자 책임 (supplier's liability)이라고 한다.

즉 제조물배상책임은 제조업자, 공급업자의 수중을 이탈된 시점에서 제품에 하자(결함)가 있어야 하며, 구매자,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어야 하며 피해가 제품결함으로 인해 발생(인과관계)될 경우에 성립한다.

<표-1> 제품결함의 내용



자료 : 윤정현, "제조물책임의 영향과 대책," 「신한리뷰」, 1996, p. 53.

1) 조경환, "영, 미법상의 제조물 책임이론의 발전과 전망," 「해외파견검사 논문집」, 1981, p.43.

제조물배상책임은 반드시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발생되므로 결함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각국마다 제품결함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여 일괄된 정의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결함이란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결함은 제품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인 제품본체의 결함과 제품내용 및 사용방법에 대한 부정확한 설명으로 인한 제품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 1> 참조).

2. 제조물배상책임 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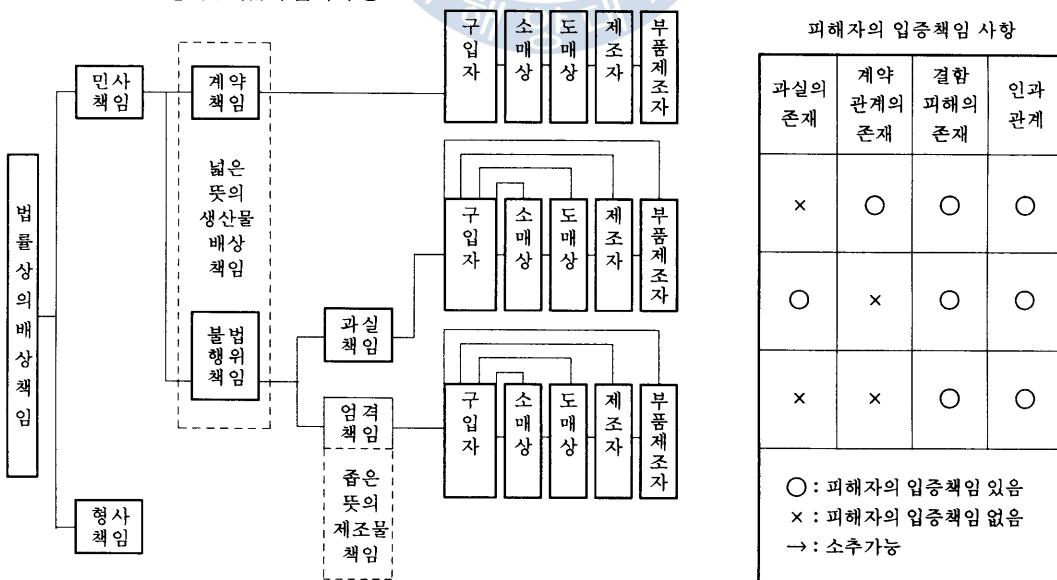
1) 기본법리

법치국가에서 배상책임은 국가의 형벌에 저촉되는 경우 발생되는 형사상 책임과 국가나 공공단체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등 개인간에 발생되는 민사상 책임으로 양분된다.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제조물배상책임은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손해발생시 금전적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민사상 배상책임이다.

이와 같은 민사상 보상책임은 크게 당사자간의 계약의 존재(privity of contract)를 전제로 하여 발생되는 계약책임(contract liability)과 직접적인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없어도 제3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행위책임(tort liability)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생산자, 유통업자 등) 과실을 피해자(소비자, 사용자)가 입증할 경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과실책임(negligence liability)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으로 양분된다²⁾(<그림 - 1> 참조).

<그림 - 1> 제조물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생산물배상책임법 및 소송사례」, 1995. 5.

2) 김재봉,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박대위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1996, pp. 510~513.

제조물 배상책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본법리를 종류별로 내용, 거증책임, 제품특성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2> 참조).

<표-2> 제조물배상책임 기본법리의 주요 내용

	주 요 내 용	거증책임	제품의 특성	유통구조	제조업자의 책임정도	법리 적용 국가
계약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한 제품이 계약에 의해 약속된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 발생 제조자, 설치자는 법률상 하자 담보 및 채무불이행 책임짐 당사자간에 계약관계 성립이 필수적임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간에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책임추궁 불가능 - 제소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일정기간 후에는 제조자에 대한 책임추궁 불가능 	피해자(소비자)가 가해자(생산자)의 제품결함과 관련된 과실 입증(단, 피해자와 가해자는 계약상 당사자 관계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광산물, 수공업 제품 등 단순제품 제조자 임의의 품질기준 제품의 결함 발견이 쉬움 	소비자가 제조자로부터 직접 제품구입	책임이 작다	대부분의 국가
과실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판매과정 또는 사고 발생후 제품회수등에 있어서 생산자가 주의 의무를 대만이 할 경우 발생 매도인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 추정하지 못하면 배상책임 추궁 불가능 - 제조공정, 유통과정에서의 가해자측의 과실을 전문적, 기술적 지식 부족으로 피해자가 증명하기 곤란 과실 책임이론 확장 - 입증책임 전환이론 (conversion of burden of proof theory) :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 입증책임 경감이론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 관계를 분석 	피해자가 가해자의 제품의 결함과 관련된 과실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생산, 공업제품, 기술집약제품 소비자지향적 품질기준 제품의 수명 주기 짧음 제품의 결함 발견이 어려움 	소매상, 도매상 등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가짐	책임이 보통	대부분의 국가
보증 위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법 범주에서 발전된 원리로 제품이 가지는 목시적 또는 명시적 보증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엄격책임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보증 : 제품의 특성이나 품질에 관해 상품로서 적정성(merchantability)에 대한 구두, 서면보증 - 목시보증 : 제품의 성분이나 품질, 소비자의 특별 용도에 적합성(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메스컴을 통한 광고나 설명서는 명시 보증을 성립한다는 근거 하에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조건폐지 과실책임 이론의 한계 극복하고 과실책임 원칙에서 엄격책임을 이행되는 중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 : 계약상 제소기간 및 손해배상의 규모 및 범위에 제한(면책 약관 삽입) 	피해자는 가해자의 제품결함과 관련된 과실입증 필요없음	상동	상동	책임이 크다	미국
엄격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과실유무를 떠나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보전 제품의 복잡한 제조과정과 유통과정에서 가해자측의 과실을 피해자측에서 증명이 어려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1960년대 미국에서 도입, 발전 피해자인 소비자가 가해자인 판매업자의 과실 또는 보증책임 불이행을 도증할 의무 면제 	가해자가 입증 책임	상동	상동	책임이 크다	미국, EU, 일본

2) 우리 나라 법리

현재 결합제조물의 피해에 대한 우리 나라의 적용법규는 제조물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민법의 법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³⁾. 특히 결합제조물과 관련된 민법상 배상책임은 크게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 등의 계약책임법리와 과실책임을 토대로 한 불법행위 책임법리가 적용되고 있다.

결합제조물에 대한 계약책임 법리로써 현행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과 민법 제580조 및 581조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 즉 소비자와 제조업자간의 계약 존재를 전제로 하여 제품이 계약에 의해 약속된 수준에 미달될 경우 소비자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결합제조물에 대한 배상책임 소송에서 소비자와 제조업체사이에 직접적인 계약당사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동 법리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⁴⁾.

한편 우리 나라의 제조물배상책임 소송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법리는 전통적인 과실책임이론에 토대를 둔 민법 제750조⁵⁾의 불법행위 책임법리이다. 즉 불법행위 책임법리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 관계가 없어도 제조업자 등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후자의 손해에 대해 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법리이다.

다만 결합제조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청구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법리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공정한 점과 고도의 전문적, 과학적 기술이 내포된 현대의 제조품에 대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합제조물 배상책임과 관련된 현행 우리 나라의 민법과 선진각국에서 제정, 적용하고 있는 제조물배상책임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 3>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의 주요내용의 비교

구 분	제조물배상책임법	민 법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대 상 물	제조물(동산)	동산·부동산·행위 등		
책임기준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계약관계의 전제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손해배상 등의 범위	확대손해포함	확대손해포함	확대손해불포함	확대손해포함

자료 :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제도 운영현황」, 1996, p. 82.

3) 결합 제조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민법 이외에 1980년에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구체될 수 있다. 다만 동법은 소비자와 제조업체간의 분쟁발생시 조정 즉 소송이전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계약책임 법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한계점은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제조물책임법리 현황」, 1993, pp. 10~11 참조.

5)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II. 한국 제조물책임법(안)의 주요내용⁶⁾

1. 제안이유

1990년대 이르러 우리 나라 소비자 생활환경 정도의 큰 변화에 따라 결합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고도화, 기술화 그리고 유통과정의 복잡화 현상이 더욱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와 제조사 사이의 정보와 위험회피 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에 발생하는 결합제품에 의한 피해의 방지·구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즉,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의 강화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구제책 확보가 요구된다.

한편 현재 결합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현행 민법상의 계약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즉 소비자 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 법리의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주요내용

1)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제1조는 제조물책임법의 직접목적으로서 제조물의 결합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를 선언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피해 구제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전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의식이 변화되고, 재판상 또는 재판외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서 쟁점이 객관화·명확화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류에 맞춘 제도가 확립됨으로써 피해자는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달성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2) 무과실책임의 원칙

제2조는 제조업자 등이 지는 제조물책임이 책임근거규정으로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즉, 제조물책임은 책임원칙을 「과실」에서 「결합」으로 변경하였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불법행위책임이다. 그러나 과실책임은 주관적 책임인 반면에 결합책임은 객관적 책임인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제조물책임은 결합제품으로 인하여 당해 제품 이외의 사람의 신체나 다른 재산에 대한 피해, 즉 확대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당해 제품의 결합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그 제품 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

6)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공청회 자료, 1998, pp.19~39에 의해 작성함.

함제품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동법을 적용한다.

3)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은 기본적으로 제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4조는 제조물의 범위를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때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가공·검사·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제2차 산업에 관계 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1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서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공」이라 함은 재료에 공작을 하여 새로운 속성을 부여하거나 가치를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제조·가공이 가해지지 않는 천연적인 산물 즉 미가공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본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법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즉 전기·가스 등은 포함된다.

4) 제조물책임의 주체

제4조는 완성품의 제조자와 원재료·부품의 제조자는 물론 제조물을 수입한 자를 제조자에 포함하고 제조물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그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하여 제조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자로 간주한다.

또한 이러한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판매자 등 공급자에 대하여 2차적·보충적 책임을 인정한다.

5) 결합의 정의 및 판단기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합의 존재는 책임추궁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며 결합이 없을 경우 제조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결합에 대한 정의 및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제5조에서 결합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결합의 개념에 안전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품질상의 문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제조물 자체의 손해를 뛰어넘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까지 확대된 손해를 전보해 주겠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면 결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결합판단의 주체에 관해서는 제조자, 소비자도 포함한 사회일반인의 기대내용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② 결합판단의 시기에 관해서는 제조자에 의하여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이라 해야 할 것이며 ③ 결합판단의 요소는 제조물의 특성,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 기타 표시, 제조물의 사용상태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합의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6) 복수의 책임주체

제6조는 제조물의 결함 발생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책임의 비율과 상관없이 각 자가 손해 전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7) 제조자의 면책

제7조는 제조자가 동법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고 있다⁷⁾.

- ① 제조자가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 ②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상의 강제기준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제조물의 제조가 위법이 됨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 ③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을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본 면책사유는 「개발위험⁸⁾의 항변」을 규정한 것이다.
- ④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8) 면책특약의 효과

제8조는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특약은 오늘날 거래가 대부분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표-4> 우리 나라 제조물책임법(안) 주요내용

주 요 내 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구제도모 • 국민생활이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손해배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 침해 • 무과실 책임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 적용
제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서비스 제외 • 관리가능 한 자연력인 전기, 가스 등 포함
제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품, 원재료, 부품 제조자 •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판매, 대여를 목적으로 제조물 수입한 자 • 제조물 공급자
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 • 당해 제조물에 대한 설명, 지시, 경고 및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용형태, 유통시기를 고려
연대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의 책임 주체의 경우 연대 책임 인정
면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영리목적의 유통 • 결함이 법률의 강제기준 준수에 의한 경우 • 개발위험 • 부품제조자의 경우 결함이 완성품 설계 및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 준수에 의한 경우
면책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 책임을 배제, 제한하는 계약 무효
소멸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적용 • 제조물 유통 후 10년의 손해배상청구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체에 누적된 경우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청구권 기산

7) 본조에 의한 책임 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배상책임까지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8)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수준」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당해 결함의 유무의 판단에 필요하게 되는 입수 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의 제한

제9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또는 제조물을 유통에 둔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 중에 제조물의 사용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비로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작성한 우리 나라 제조물 책임법(안)의 내용과 미국¹²⁾, EU¹³⁾, 일본¹⁴⁾ 등 주요 선진국의 관련법규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면 배상책임의 법리, 결합판단기준, 그리고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등 주요내용들은 대부분 유사하다.

다만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의 범위, 배상책임액의 한도설정,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부과 여부 등의 내용에 있어서는 각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 5> 참조).

<표 - 5> 우리 나라 입법안 내용과 주요국과의 비교

국가 주요내용	미국	E U	일본	한국(안)
책임법리	엄격책임주의	엄격책임주의	엄격책임주의	엄격책임주의
제조물 범위	자연산물, 동산, 서비스 등 대부분이 포함됨	1차 농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선택사항) 모든 동산	제조가공된 동산에 한함(백신포함)	미가공 농·축산물,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동산
결합판단기준	소비자 기대수준 위험 - 효용분석	소비자 기대수준	소비자 기대수준	소비자 기대수준
입증책임부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제소기한(사고발생 일 기준책임기한)	1년~6년 (주별로 상이)	사고일로부터 3일	사고일로부터 3일	사고일로부터 3년
법정책임기한 (상품유통일기준)	10년 (많은 주에서 채택)	10년	10년 (누적손해의 경우 손실 발생일로부터 10년)	10년 (누적손해의 경우 손실 발생일로부터 10년)
개발도상위험 인정여부	인정 (state of the art)	원칙적으로는 인정 (선택사항)	인정	인정
징벌적손해배상	인정	부인	부인	부인
책임부담자	제조업자(완성품, 부품, 재료), 공급업자, 자기상표부착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등 제조 유통에 관여한 모든자	제조업자(완성품, 부품, 재료), 자기상표부착자, 수입업자, 공급업자	제조업자(완성품, 부품, 재료), 수입업자, 자기상표부착자	제조업자(완성품, 부품, 재료), 자기상표부착자, 수입업자, 공급업자
배상한도액	설정없음	원칙적으로는 7000 만 ECU(선택사항)	설정없음	설정없음

9) 1963년 최초로 엄격배상책임 법리를 도입한 미국은 1997년에 「불법 행위법 개정된 리스트레이트먼트 (restatement)(3판)」을 제조물 배상책임 소송에 적용하고 있다.

10) EU는 「결합 생산물 책임에 관계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 규정의 조정에 관한 각료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85/374/EEC)」을 1985년에 제정하였으며, 각 회원국들은 동지침을 국내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11) 일본은 「제조물 책임법」을 1994년에 제정하여 1995년부터 시행중이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제조물배상책임 관련 법규내용이 가장 엄격하며, 우리나라 법안과 일본의 법은 기본적으로 EU의 지침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

IV.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적대응

1.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소비자의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및 배상손실의 증대, 그리고 제품품질의 향상 등 기업의 전반적 경영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은 기업경영에 제조물배상책임 리스크 관리비용의 증대로 인한 경쟁력 감소 등의 부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제품안전성 확보에 의한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도 미칠 수 있다.

미국 Conference Board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¹²⁾ 제조물책임법은 배상책임소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직접비용 및 일반관리비용 증가, 기업파산, 제품생산 중단, 종업원 해고, 시장점유율 감소, 연구개발중단,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M&A에 소극적 등의 부정적 영향과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부정적 영향

(1) 리스크 관리비용 증가

제조물배상책임법의 도입에 따라 배상책임 리스크로 부터 발생되는 손실의 빈도 및 규모를 최소화 시키는 것과 관련된 리스크 통제비용과 손실발생 후에 현금흐름을 원활히 시켜 기업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재무비용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비용이 증대될 것이다.

즉, 제조물배상책임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공정 및 품질관리, 부품 및 원자재 관리, 그리고 시설대체 등 제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비용과, 광고, 취급설명서, 유통업자에 대한 교육, 전담 부서의 설치 등 제품유통과 관련된 비용 등 추가적인 손실 방지대책 수립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제품에 대한 결함은 기업의 전반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합제품의 빠른 회수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이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제조물배상책임 손실이 발생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과 기업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및 공제기금 등 적절한 손해배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¹³⁾.

이에 따라 기업은 제조물배상책임 및 회수보험의 부보 및 공제조합의 가입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

12) The Conference Board, 「The Impact of Product Liability」, Research Report No., 908, 1988.

13) 최근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사이에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즉, 보험가입금액이 1994년에는 38억원에서 1995년에 45억원, 그리고 1996년에는 5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중앙일보, 1998년 7월 1일자)

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조물배상책임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제비용은 직접적으로 제품의 생산원가를 상승시켜¹⁴⁾ 기업의 경영채산성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제품 개발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2) 배상책임 소송의 증가

제조물배상책임법의 도입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강화시켜 주므로 기업의 결합제품에 대한 피해자의 법적인 소송이 증대될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제품사용 중 피해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품자체의 결함이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96%가 현행피해보상제도의 한계로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 6>, <표 - 7> 참조)¹⁵⁾.

<표 - 6> 피해 · 손해배상의 원인

(단위 %)

구 분	기 업	소 비 자
자품자체의 결함	42.9	37.8
소비자 부주의	26.4	33.9
유통과정상의 부주의	20.9	-
위험 · 부주의에 대한 표시미비	4.7	25.8
기타	5.1	2.5
계	100.0	100.0

<표 - 7>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

구 분	비 율
현행제도로는 피해보상이 곤란하여 전적으로 소비자의 잘못이어서	35.8
제조자의 잘못인데,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해서	21.8
제조자의 잘못인데 제조자가 배상을 하지 않아서	9.0
기타	7.4
계	26.0
	100.0

또한 미국도 제조물배상책임에 업격책임 원칙이 도입, 적용됨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된 소송건수가 크게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및 소송금액 역시 고액화 되고 있다.

즉 연방법원에 제소된 제조물배상책임 소송은 1980년에 7,755건에서 1990년에는 19,428건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평결액도 동기간에 563천 달러에서 1,136천 달러로 크게 상승되었다(<표 - 8> 참조).

이로 인해 관련 보험료의 증대와 보험인수의 거절 등으로 기업의 비용의 상승뿐만 아니라 파산기업의 증가로 국가경제 전체의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등 제조물배상책임 위기(product liability crisis)

14) 생산물배상책임법이 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Richard L. M., "203 Products Liability Prescription Drug Prices in Canada and the U.S.A," *Journal of Law & Economics*, April, 1997, 참조.

15) 한국소비자보호원, 전계논문, p. 7.

<표-8> 미국의 제조물 소송 건수 및 평결액 현황

(단위 : 건, 천달러)

년도	평 결 소 송 건 수		평균평결액	평결액의 중간값
	100만\$초과	전체건수		
1980	127	7,755	563	225
1981	238	9,071	801	340
1982	280	8,944	851	300
1983	366	9,221	1,246	300
1984	415	10,745	1,467	500
1985	590	13,554	1,091	550
1986	410	13,595	1,007	297
1987	428	45,151	863	265
1988	481	17,140	1,324	485
1989	588	14,348	1,058	400
1990	735	19,428	1,136	300

자료 : Jury Verdict Research, "Current Award Trend in Personal Injury," 1993.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1996. p. 21에서 재인용.)

국면에 당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도 1995년에 제조물책임법을 제정, 시행한 이후 제품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크게 신장되어, 동법 도입 후 4개월 만에 제품결함에 따른 피해 보고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¹⁶⁾.

따라서 우리 나라도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면 소비자와 제조업체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피해자의 배상책임소송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조물배상책임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수의 사고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될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액의 한계가 없고 소송의 장기화 및 복잡화 등의 특성을 고려 시 향후 기업 파산위기도 초래될 수 있다¹⁷⁾.

(3) 중소기업에 대한 심각한 영향

제조물배상책임법의 도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제조물배상책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은 대기업의 경우 비교적 풍부하여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은 더욱더 큰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¹⁸⁾.

또한 국내 대기업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의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통해 이미 제조물책임법을 인식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대기업에 의한 하청생산 및 간접수출에 의존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부족하여 국내에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될 경우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16) 윤정현, 전계논문, p. 55.

17) 일례로 미국의 경우 제조물배상책임 소송에 연루된 기업 중 8%가 경영을 중단하였다. George J. B., "Product Liability Law Reform at Last, Maybe," 「Cahners Business Information」, Reed Elsevier, Inc., 1997.

18) Paul A. Herbig and James E. G. "Innovation and Product Liability,"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 23, 1984, p. 251.

그리고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관행으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 증가 및 배상책임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일반적으로 전가시킬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소비자 역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결함에 따른 피해 배상능력이 더 큰 대기업 생산제품을 더욱 더 선호하여 중소기업의 경쟁적 지위는 더욱 약화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자본, 인력, 기술능력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량 중소기업의 도산 사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4) 무역장벽으로 작용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제조물배상책임에 대하여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EU, 일본 등의 국가는 이미 업격책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등의 제조물배상책임법은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동법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제조물배상책임 법리가 상이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각국의 제조물배상책임법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변형시키거나 각국의 법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생산설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은 추가적 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국내를 포함하여 여러 지역으로 동일한 제품의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없어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수입국 정부가 제품의 결함, 피해판정 등에 생산물 배상책임 법규를 자국에서 생산되는 국내 제품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것이다.

2) 긍정적 영향

(1) 품질 경쟁력 제고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기업에게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제반 리스크 관리비용을 부담시켜 경영활동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즉, 제조물책임 리스크가 경영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 품질개선 노력증대, 정확한 상품 정보 등의 제공 등 제품의 제조, 유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품질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국제 경쟁력 제고

기업의 국제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재의 경영환경 하에서 국내에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될 경우 품질 향상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경영에서 동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엄격한 제조물배상책임 법리를 도입, 적용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으로 수출시 동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 강구 부족으로 많은 배상책임 소송에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동 리스크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먼저 국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대비책 모색과 경험 축적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수출활동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

(3) 제품혁신

제조물배상책임법의 도입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소비자 욕구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제품에 안전개념을 강조한 즉,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제품혁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4) 국내 및 해외기업간의 형평성 제고

현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 일본 등에서 많은 제조물배상책임 소송에 연루되어 있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지금까지 국내 제조물책임법의 미비로 이에 대한 큰 경영부담 없이 경영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기업경영 시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생산물배상책임 소송의 법적대응¹⁹⁾

생산물배상책임 소송에서 피해자(소비자, 이용자 등)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법리에 합당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즉,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생산물의 결함 존재, 결함있는 생산물의 사용에 따른 피해발생 그리고 피해와 결함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경우 배상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산물배상책임 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행위 등 몇 가지 요건을 통해 가해자(제조업자, 유통업자 등)는 법적으로 배상책임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즉, 제조업자는 기여 및 비교과실(*contributory and comparative negligence*), 위험인수(*assumption of risk*), 개발도상의 위험(*development risk*), 책임기간(*liability period*), 그리고 제품의 오용 및 변경(*product misuses and alteration*) 등의 주장을 통해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을 방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항변권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배상책임 법리에 따라 그 유효성에 한계가 있다.

1) 기여 및 비교과실

기여 및 비교과실은 피해자의 특정행위를 가해자가 배상책임소송의 방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먼저 기여과실은 결합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관련된 경우,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기여과실 개념은 과실책임에

19) 김재봉, “미국, EU, 일본의 생산물배상책임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한국해양대, 1999, 봄호.

토대를 둔 소송에서는 유용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보증책임 및 업그레이드 책임법리 하에서는 동 개념의 적용이 곤란하다.

한편 비교과실이란 기여과실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두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액은 피해자의 과실비율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²⁰⁾. 이러한 비교과실의 개념은 다소의 논란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증책임과 업그레이드 책임법리 하에서 원용될 수 있다.

2) 위험인수

위험인수란 피해자가 제품에 내재된 고유의 위험을 인수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를 배상책임 소송에서 항변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인식하고 피해가 발생될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될 경우 제조업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인수항변은 과실책임법리보다는 업그레이드 책임법리 하에서 보다 유효한 방어수단이 될 것이다.

3) 개발도상의 위험

개발도상 위험은 제품의 결함을 설계 또는 제조당시의 보편적인 과학기술수준으로 발견할 수 없는 위험으로, 제조업자는 배상책임 소송에서 이를 원용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을 제조할 당시에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생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도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도상위험 항변은 제조당시의 환경을 토대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 하에서 대두된 개념으로 과실책임 및 업그레이드 책임법리 하에서 방어수단으로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4) 책임기간

책임기간은 소멸시효(statutes of limitations)와 법정책임기간(statutes of repose)으로 구별되는데,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발생일 또는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소송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정 책임기간은 생산물이 시장에 유통된 후 제조업자가 동제품에 기인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기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소멸시효 및 법정 책임기간을 근거로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이론인 과실 및 업그레이드 책임법리 뿐만 아니라 보증책임법리 하에서도 방어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

20) 비교과실은 과실비율 적용방법에 따라 순수비교과실과 수정비교과실로 양분된다. 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경감시키는 것이며, 후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가해자의 일정수준과 같거나 적을 때 가해자에게 배상액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전개서, pp.12 ~13 참조.

5) 제품의 오용 및 변경

제품의 오용 및 변경이란 이용자가 제품을 제조업자의 의도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소비자가 제품의 잘못된 사용, 지시서 및 경고를 무시한 사용 그리고 제품개조 등이 손해발생의 원인이고 제조업자가 이러한 오용 및 개조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제조업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의 오용 및 변경 주장은 과실책임, 보증책임 그리고 엄격책임 법리하에서 모두 유효한 법적대응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6) 권리포기

권리포기란 소비자가 제조업자 및 판매자와 계약을 통해 구입된 제품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포기계약을 원용하여 제조업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생산물 배상책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는 권리포기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²¹⁾.

V. 결 론

1970년대 이후 소비자 보호운동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입법적, 제도적 조치들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구되었다. 즉, 미국은 1963년부터 최초로 엄격배상책임 법리를 토대로 한 제조물배상책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EU는 결합 생산물 배상 지침 안을 1985년에, 그리고 일본은 제조물책임법을 1995년에 제정,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 피해에 대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문제 거론이 본격화되면서, 결합제품에 대한 소송건수의 급증과 배상액의 고액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도 1980년대 접어들면서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결합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 도모를 목적으로 EU지침과 유사한 「제조물책임 특별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0년에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경영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제조물배상책임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은 제조물 배상책임 리스크에 대해 방어적인 차원보다는 품질인증을 획득하거나 기술향상을 통한 안전도 개선을 도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동 리스크의 특성상 단계별로 다수의 관련 기업들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생산, 판매에 연관된 모든 기업들의

12) 일례로 미국의 통일 통상법(UCC 2-316)에 따르면 권리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imitation of consequential damages or injury to the person in the case of consumer goods is prima facie unconscionable but limitation of damages where the loss is commercial is not」, 또한 우리나라 입법안 제8조 면책특약의 금지조항은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업의 제조물 배상책임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전담조직의 구축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의 수립이 필요하다.

<부록> 제조물책임법(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손해배상책임)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제조물)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제 4 조(제조자) 이 법에서 제조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 · 부품의 제조자
2. 제조물에 성명 · 상호 · 상표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산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
4.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

제 5 조(결함)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 지시 · 경고 기타의 표시
2.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3. 당해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

제 6 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자가 그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면책사유)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1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2.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한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는 사실
3.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4.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 8 조(면책특약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제 9 조(소멸시효)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 날을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를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체에 누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법은 이 법의 시행 후에 제조자가 유통시킨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 고 문 헌

강창경, “제조물책임제도와 리콜제도,” 한국표준협회 제조물심포지엄, 1996.

강창경 외 2인,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리콜제도 운영상의 제 문제,” 1996.

_____,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필요성 및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1996.

권오성, 「우리 나라 수출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관리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김재봉, “한국수출기업의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 「경제 학논집」, 한국동남 경제학회, 1995.

_____,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박대위 교수회 합기념논문집」, 1996.

_____, “미국, EU, 일본의 생산물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한국해양대, 1999.

김 현,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해설,” 「손해보험」, 1995.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제도 운영현황」, 1996.

_____, 「주요국의 제조물책임법리 현황」, 1993.

서현제,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생산물책임과 보험,” 「손해보험」, 1993.

이상정, 박진섭,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윤정현, “제조물 책임의 영향과 대책,” 「신한리뷰」, 1996, 봄호. 한국법제연구회, 「제조물 책임의 법제화」, 1994.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1998.

허 연, “생산물책임보험 도입에 관한 소고,” 「손해보험」, 1997.

Anderson, R. A., Fox, Ivan, and Twomey, D. P., 「Business Law」,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92.

Barker, Drucilla K.,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Products Liability Laws on Underwriting Risk,”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8, No. 1, March 1991.

Blickley, G. J., “Product Liability Law Reform at Last, May be,” 1997.

Dennis Campbell, Christian Cambel, 「International Product Liability」,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3.

Griboney, Lynde, “Product Liability Law and Reform,” 1995.

Griffiths, Margaret, LL.B., “Defectiveness In EEC Product Liability,” 「Journal of Business Law」, May 1989.

Jose, Fracnk C., 「R&D Role in Product Liability」,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Inc., 1970.

Kellam, Jocelyn, 「Product Liability in the Asia - Pacific」, Klunor Law International, 1995.

- Law Office of Herbert Monheit, "Product Liability Cases," 1996.
- Lenz, Mattew, "Risk Management Manual," Merrite Co., 1998.
- Lieberman, J. K. and Siedel, G.J., "The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 Harwart Brace Jovanovich Publishers, 1988.
- McCarty, F. W., "The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 Irwin, 1993.
- MITI, "Guide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1994.
- Neely, Richard, "The Product Liability Mess," the Free Press, 1988.
- OECD, "Products Liability Rules in OECD Countries," 1995.
- Sako, R. Y., "Japan Adopts Product Liability Law," 1996.
- Stanton, K. N., "The Modern Law of Tort," Sweet & Maxwell, 1994.
- The Conference Board, "The Impact of Product Liability," No., 908, 1988.
- The council of the EU, "council Directive 85/374/EEC of 25 July 1985," 1998.
-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Product Liability Reform Act," 105th Congress, 1997.
- Weber, Nathan, "Product Liability : The Corporate Response," Conference Board, No., 893, 1987.



